

**부속서 10-다**  
**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**

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해를 확인한다.

- 가. 제10.21조제3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는 분쟁과 관련하여, 분쟁 당사국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조치가 제10.18조제2항에 의하여 규정된 안보상 예외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, 심지어 중재절차가 손실 또는 보상에 대한 주장 또는 그 법정에 회부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경우라도 분쟁 당사국이 그러한 안보를 고려하여 채택한 결정은 어떠한 중재법정에 그 시비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부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나.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하여, 제10.21조제3항은 제10.18조제2항에 규정된 안보적 예외상 취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 또는 보상을 위한 중재절차에 적용될 수 있다.